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4일, 임미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2026. 9. 8.)

상정, 축조심사, 의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임미애의원)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지자

체 및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 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현장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육성계획 이행 점검 및 국회 보고 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 등 민간단체 육성 및 예산 지원 규정 마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함.[1)]

화학 비료나 농약 사용은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빗물 등으로 인해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 화학 비료 등의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와 같은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는 기존 관행농어업의 폐단 및 한계에 따라,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접근법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계획 등을 수립・추진하여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1～'25) 계획[2]”을 추진한데 이어 '25. 12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하였음.

---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 개요 】

비전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인증 면적을 2배로 확대 * 총 경지면적 대비 유기/무농약 면적 비율(%): ('24) 2.5, 2 → ('30) 5, 4 ◇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화학비료 및 농약 감축 * 화학비료/합성농약(kg/ha) : ('24) 233, 10.0 → ('30) 227, 9.0		
2대 분야 추진전략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가. 생산 기반 확충	①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② 유기농업자재지원 확대 ③ 친환경농업 집적화 및 품목별 조직화 ④ 친환경 농지 보장성 강화 ⑤ 인력 지원 확대 및 재배기술 교육·보급
		나. 수요 기반 확대	① 친환경농산물 공공수요 확대 ②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센티브 ③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소비활성화 ④ 친환경 자조금 역할 확대 ⑤ 친환경농업 환경가치 인식 제고 ⑥ 소비자 교육 강화
		다. 유통 구조 개선	① 유통 및 판매망 확충 ②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 ③ 국제협력 강화 ④ 친환경 생산·유통 통계 구축
		라. 과정 중심 인증제도로 개선	①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 강화 ② 인증마크 체계 개선 ③ 친환경-저탄소 인증 연계 ④ 유기농업자재 제도개선 ⑤ 인증기관 육성
	농업환경 보전 지속 추진	가. 농지 및 수질 보전	① 농지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확대 ② 노지 스마트팜 및 정밀농업 확산 ③ 농업용수 수질 관리 강화 ④ 농업환경변동조사 확대·개편
		나. 생태계 보전	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개편 ② 미생물 농자재 생산·보급 확대 ③ 친환경 방제 기술 개발·보급
		다. 탄소 감축	① 저탄소 농업 유인체계 구축 ② 저탄소 농업 기술 개발·보급
		라. 영농폐기물 및 가축분뇨 관리	① 농업부산물 자원화 및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② 가축분뇨 자원화 및 경축순환 활성화
추진체계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및 관계기관 정책 협의회		

※ 자료: 농식품부 제출

그런데, 현재 완료된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의 주요 목표 대비 달성실적을 살펴보면,

농약 사용량의 경우 1년차('21년) 10.5kg, '24년 12.3(kg/ha)로 나타나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여 당초 목표인 '25년 농약 사용량 9.5(kg/ha)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3].

또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 확대(10%)의 경우에도 1년차('21년) 5.2%, '24년 4.5%로 오히려 감소하여 당초 목표('25년 10%)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주요 목표 및 달성현황(24. 12. 기준) 】

구 분	2021년 당시	2024년실적	목표치
소비자 인식개선 여부	27.5%	**40.8%**	**50%**
농지 1ha당 화학비료 사용량	266kg	**233kg**	**233kg**
친환경 인증면적(%)	5.2%	**4.5%**	**10%**
농지 1ha당 농약 사용량	10.5kg	**12.3kg**	**9.5kg**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이에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법 제5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친환경농어업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3) (농식품부) '25년 실적은 현재 집계중으로, 6월경 발표할 예정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등의 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령 규정을 근거로 현재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현행법 규정에 의해서도 민간단체가 공익적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막연한 기대효과만을 근거로 민간단체의 육성 자체를 정책적 목적으로 설정하여 법규화하기보다는 민간단체의 역할과 기능 및 그 활동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더욱이, 민간단체의 활동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조직·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가 불분명한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은 재정적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3조제4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공조직의 비대화 및

고정경비 지출에 따른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 입법례와 같이 '지정' 방식으로 수정하여 정책 집행의 유연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사 입법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지정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5(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셋째, 설령 민간단체 육성이나 친환경농어업 현장 지원기관 설치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할 만큼 중요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민간단체 연합회도 민간단체와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민간단체 범위에 포함(안 제5조)

현재 개별 민간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민간단체 연합회'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이 법률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과 정책 참여 과정에서 해당 연합회가 소외되고 배제된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책 협조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체로 '민간단체'와 함께 '민간단체 연합회'를 명시함으로써 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화하고, 정책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상 '민간단체'의 개념에 '연합회'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민간단체의 구성원이 자연인(개인)인지 법인 또는 다른 단체(개별 민간단체)인지만 다를 뿐, 친환경

농어업 발전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라면 그 형태가 연합회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민간단체로 인정되어 아래 표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음.

【 민간단체 연합회 농식품부 지원 내역 】

(단위: 백만원)

번호	단체 구분	단체(업체)명	신청금액	전년도 대출금액	배정금액
1	일반	한살림사업연합(주)	2,500	2,000	2,000
2	농업	농업회사법인 여주한살림주식회사	350	224	21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둘째, 상위 개념인 '민간단체'에 이미 포함되는 하위 개념인 '연합회'를 법률에 명시할 경우, 명시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연합 조직(협의회, 연맹, 네트워크 등)은 법적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현행법 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현행법상 민간단체의 범위에 연합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유권해석이나 행정지침을 일선 지자체 등에 통지함으로써 실제 보조금 지원이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연합회가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실무적인 개선 조치를 마련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내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안 포함 (제7조제1항 개정 및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의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 및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차원의 친환경농어업 관련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의 노력을 통한 민관 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육성계획 수립 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법률상 육성(기본)계획 내 민간단체 지원 부분 포함 비교 】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내용 포함 법률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내용 미포함 법률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10. 독도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통일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3조(남북관계 발전기본계획의 수립)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환경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법」을 포함한 대다수 법률

한편,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 민간단체 지원 또는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다수의 법률에서 기본계획 내에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특정 산업의 육성보다는 "범정부적인 외교 및 환경" 등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민관 협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서는 기본계획에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육성계획 수립 시 민간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4]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관련 사항을 간접적으로 육성계획(현행법 제7조제2항제4호·제6호[5])에 반영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육성계획에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관련사항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또한, 안 제18조의2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식품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안 제7조제1항과 같이 육성계획 수립 시 안 제18조의2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정책의 공신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관리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산림복지진흥계획) ④산림청장은 제1항 및제 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3조제3항에서 친환경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 여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으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방안을 의무 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내용상 체계 정합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검토하여 필요 시 육성계획에 시책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 제5조에서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 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민간단체”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제2항제10호의 “제5조의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방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법 제7조제1항[6]에 따라,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수립 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심의 권한이 있는 공식 거버넌스가 부재함에 따라, 수렴된 의견이 육성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 시책 추진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당초 계획 수립 시점보다 농약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친환경 인증면적 또한 감소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1～'25)은 기존의 현장과 동떨어진 '톱다운(Top-down)' 방식의 한계를 나타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전문가,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상호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계획 등을 조정·협의·심의하는 공식 기구로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첫째, 안 제18조의2제1항은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식품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조제4호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7]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8]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9]을 “유기식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친환경농식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안 제1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도 소관이 아닌 농식품부장관 소속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 상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어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9)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

각각 구분하여 두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둘째,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신설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민간대표가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통적인 관(官) 주도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대등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친환경농어업은 민간의 자발적 실천과 소비자의 신뢰가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유사 입법례와 같이 민·관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여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동물의 보호·복지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하 생략)

다만,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등 생산자(규제 완화 요구)와 소비자(안전성 강화 요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 관(官)과 민(民) 공동위원장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위원회 운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런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셋째, 안 제18조의2제6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동 위원회가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등 친환경농어업 관련 국가의 핵심 시책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친환경 농어업인의 예산 지원, 의무 이행 사항, 그리고 소비자의 식품 안전 등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 및 국가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소지를 방지하고 위원회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사 입법례와 같이 위원의 핵심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유사 입법례 】

「동물보호법」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5. 친환경인증품 구매 촉진을 위해 우선구매 대상 추가(안 제55조제2항 제5호 신설)

높은 생산비 및 불안정한 판로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농가가 일반 관행 농업으로 회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화학비료·농약 사용 증가를 야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포함하는 것은 안정적인 공공 수요 창출을 통해 친환경 재배 면적 확대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조치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화학비료·농약 사용 저감으로 이어져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유인체계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10]

10)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